## 교육특화본부 운영규정

제 정 2018. 02.

개 정 2020. 09.

제1조(명칭) 본 본부는 우송대학교 교육특화본부(이하 "본부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교원들의 건강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선된 교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며, 학생들의 학습역량증진과 함께 교육의 건전성과 선순환적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업) 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교수학습업무(교수학습센터) : 교수학습 및 교수역량, 학생 학습역량 지원, 온라인 컨텐츠 개발, 교수학습지원과 관련한 교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
- 2. 고등교육평가업무(고등교육평가원): 대학 자체평가 진단과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질관리 및 질개선 업무, 대학 장·중·단기 발전 비전에 부응하는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과 진단 및 메타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 운영 및 개선업무,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교육 체제의 평가업무, 대학교육 질관리 및 기획·평가·개선업무, 비교과 활동 성과 분석·연구 및 환류 개선업무
- 3. 비교과교육관리업무(비교과교육관리위원회): 학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, 개선 방안 설계, 심의 확정, 환류체계의 통합관리 수행
- 4. 기타 교육특화본부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
- 제4조(본부장) ① 본부는 본부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본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
제5조(직제) 본부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특임부총장이 되며, 위원은 각 센터의 센터장 및 원장을 포함하고 교무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.(2020.09.01.)
-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본부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- 2. 주요 사업 및 과제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 사항
- 4. 그 밖에 본부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자문위원) 본부의 사업기획 및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그 밖에 본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